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2023. 6.



Contents.

PART	01	상병수당 제도 소개	6
PART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0
PART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14
		1. 대상자	14
		2. 상병 요건	19
		3. 구비서류 준비	22
		4. 상병수당 신청	24
		5. 상병수당 심사 관련 유의사항	29
		6. 급여 지급	30
		7. 연장신청	32
PART	04	기타 안내사항	34



01

상병수당 제도 소개

1. 상병수당 제도 소개

1. 정의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부터 3차례 상병수당 운영 기준 제시

3. 제도의 주요 기능

- ①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 ②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③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 ④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사례 | 무릎관절 수술로 인해 6개월간 일을 쉬어야 하는 택배노동자 A씨

- (도입 전) 6개월간 근로소득 상실 → 가계 저축을 소진, 대출로 생활비 충당하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 신청
- (도입 후) 상병수당 통해 소득 보전, 대출·공적부조 등의 도움 없이도 생계 유지 가능

사례 | 가슴에 멍울을 발견한 학습지 교사 B씨

-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치료를 미룸 → 뒤늦은 유방암 및 전이 진단, 치료기간 장기화
- (도입 후) 일을 쉬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 조기 방문 → 초기 유방암 진단, 완치 후 근로에 다시 복귀

사례 | 대상포진에 걸린 임금근로자 C씨

- (도입 전) 소득 상실 우려,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 → 통증·가려움으로 일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포진 재발
- (도입 후) 상병수당을 받으며 충분한 치료·휴식 → 복귀 후 높은 생산성 발휘, 재발 없이 관리

사례 | 육가공공장의 근로자 D씨

- (도입 전) 발열 증상에도 계속 출근, 동료들과 접촉 → 공장 집단감염, 주변 지역사회 확산
- (도입 후) 증상을 느끼자마자 출근 중단하고 휴식, 진단검사 → 집단감염 사전에 차단

4. 우리나라 상병수당 제도 논의 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5. 시범사업의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이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 운영방안 마련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02.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모형5: 용인시, 익산시)

1. 주요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7.3. ~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세청에서 연계되는 사업자등록 정보 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소득·재산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재산과표액 기준 7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자)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지원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지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이상(대기기간3일) 입원*했을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산원·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은 미인정,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분만 제외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 상병수당 지원 절차



-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방법)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사방문, 우편(등기), 홈페이지통해 신청
 - (접수) 지사에서 기본요건 충족 여부(거주지, 연령, 국적) 및 필수서류 구비여부 확인 (필요 시 서류 보완요청)
- ④ (소득·재산 심사)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⑤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⑥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⑦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 연장신청·서류보완 등이 없는 경우 신청 후 30일 가량 소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30일까지 지연 가능
- ⑧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 경우 수급 기간 연장신청 가능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03. 상병수당 지원 절차별 세부 안내사항

1 대상자

1. 기본자격 (거주지, 연령, 국적)

가.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신청일 기준)

- 단, 국세청에서 연계되는 사업자등록 정보 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

* 단, 연장신청 시 ① 거주지 이전 및 ② 사업장 근로자 퇴직 경우 연장신청 불가

나. 연령

○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대기기간 해당하는 입원 초일 기준)

* 연장신청 시 연령 기준 미확인 → 연령 초과하더라도 연장신청 가능

다.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신청일 기준)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③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 연장신청 시 국적 기준 확인 → 국적 기준 미충족 시 연장신청 불가



Q & A

Q.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 근로자의 실 근무지가 시범사업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보가 시범사업 지역 외 지역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A. 2단계 시범사업은 신청인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 7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

가. 소득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가구원별 합산)로 판정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97,102원 이하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9인	11,840,000원	434,962원 이하	436,179원 이하	476,875원 이하

나. 재산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 시 증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다. 가구원의 범위

- 소득·재산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신청인의 가구단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의 범위를 확정함

- 신청인의 가구에 포함되는 자

- ①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2촌 이내)에 속하는 자 (동거인 제외)
- ②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가구에 포함
- ③ 위 기준으로 구성했을 때 신청인이 직장피부양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추가

* 해당 피부양자는 신청인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신청인의 형제자매에 한함

- 신청인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가구원 산정에서 제외)

-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다만,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인 가구에 포함
- ② 신청시점 이전 과거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에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
- ③ 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 ⑤ 대기기간에 속하는 입원초일에 전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자
- ⑥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 ⑦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닌 자로 신청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 사실혼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가구에서 제외'하나, '피부양자 단독세대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
· 다만, 상기 7가지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 단독세대 신청인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

라. 소득·재산 심사를 받지 않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 구성, 소득 ·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대기기간에 속하는 입원 초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상실자 포함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제외



3. 취업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간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격 유지
 - *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다. 자영업자

- 아래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 ②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예외 인정



Q & A

Q. 상병수당 신청 전 본인의 건강보험 혹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①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② (고용·산재보험가입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Q. 자영업자이며 입원 초일이 7.4일이라면, 취업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① 사업자등록이 입원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4월 6일 ~ 7월 4일)합니다.
 ② 매출 발생은 7월 직전 3개월(4월 ~ 6월)의 매출금액을 확인. 월 매출 평균금액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인정되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예외 인정함

* 자격기준 및 사업자등록일은 전산 정보로 확인되나, 매출기준은 신청인 증빙 및 이에 따른 확인과정의 편의를 위해 단순 '월' 기준으로만 확인

Q.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건강보험 가입 직역 또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제외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휴직자: 상병 발생 전 근로 중이 아닌 취업자
*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 인정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 보험 적용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국가 및 지자체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 예) 현역으로 군복무중인 자,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Q & A

Q. 유급병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휴직)가 종료된 후에도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유급병가(휴직)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특고직 근로자의 경우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해고(실직)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원이 되나요?

A.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상병수당을 받던 중에 실직을 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상병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와의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Q.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 목적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 현재는 타 제도(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지만 타 제도 수급을 신청하여 심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병수당 수급을 위해 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 신청은 가능하나, 상병수당 심사 중 또는 상병수당 지급 후에 타 제도 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 상병수당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 차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병 요건

1.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질병·부상의 범위

가. 기본원칙

-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나. 제외 대상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어 주진단명이 한국질병분류 R코드 또는 Z코드인 경우
* R코드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및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Z코드 :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단, 장기기증 증여자 상병코드 Z52 '기관 및 조직의 기증자' 인정



Q & A

Q. 임신부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임신부도 출산·분만과 관련없는 업무 외 상병(예) 골절)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자 기준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성형수술은 무조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예) 중증화상으로 인한 피부이식술)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을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이 업무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상병수당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2. 진료기관

- 소재 지역: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유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입원연계 외래의 범위

가.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상병이 서로 동일한 경우 동일상병으로 인정
 - 입원과 외래진료의 상병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일련의 치료과정임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나. 인정기간

- 대기기간이 속하는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이를 초과하는 경우 대기기간 다시 산정

예시

- 1.1~1.5일(5일) 입원, 1.10일 외래진료, 3.15~3.30일(16일) 입원, 4.2일 외래진료
 - 3.30일까지의 진료내역은 1.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인정, 4.2일 외래진료 건은 미인정 (4월부터는 3일 이상 입원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상병수당 재신청 가능)

다. 주당 외래 진료횟수 제한

- 1주당 외래 진료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중증질환 예외 지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지침 적용

◆ 예외지침 적용사항

(진단명) 주·부상병(제2부상병까지) KCD 3단 코드가 동일한 경우 인정
(동일 에피소드 인정) 예외 인정기간 동안 인정
(주당 외래진료 횟수) 제한 없음

- 대상: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예외 인정기간: 입원초일로부터 1년

- 대상 확인 방법: 공단 산정특례등록환자 등록여부 및 적용기간 확인
- 예시

입원 주상병 C50 유방의악성신생물 (산정특례기간: 2018.1.1.~ 2023.1.1.) 환자가 2022. 6. 30. ~ 7. 3.(4일) 입원 건으로 상병수당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인정기간: 입원 초일로부터 1년이나 산정특례가 2023. 1. 1. 종료되므로 산정특례 종료 기간 까지
- 동일 에피소드 인정: 2023. 1. 1. 까지 적용 가능
- 진단명인정: 외래 주상병 I97.2 유방절제후림프부종증후군 인정(소견서첨부)
- 주당외래 진료횟수제한: 없음. (2023. 1. 1. 까지 적용 가능)

4. 의료이용 증빙자료 발급 및 제출방법

- 제출내용: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의료 이용일에 대한 증빙 자료
- 증빙 자료 목록

이용내역구분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발급비용: 발급기관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시 신청인 전액 부담
- 제출방법: 상병수당 신청서류와 함께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

3 구비서류 준비

가.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도 출력·작성 불필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2)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소득·재산 기준 심사용

라.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별도 서류 미제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별도 서류 미제출

- 전산 조회 후 해당기관의 결과회신은 약 1일이 소요되며, 전산 연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로 취업자 인정 가능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기간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전산확인

① 【서식 2】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본인 작성)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 가능

② 대기기간에 속하는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사업장 매출내역*

* 매출내역은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 단, 위 매출내역이 없는 사업의 경우는 수당(급여) 지급 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 자료'를 매출증빙 자료로 인정함. 다만, 매출증빙 자료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서비스접속/매입내역/월별 매입내역 조회/해당 자료 출력

㉡ (현금영수증 전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매출내역(누계)조회/해당 자료 출력

㉢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접속/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해당 자료 출력,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구비하여 납부

마. 의료기관 발급서류

이용내역구분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바.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제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
- (서식)【서식 3】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용)
 - *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작성주체) 사업주
 - *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Q & A

Q. 직업이 2개인 경우 모든 직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사업장 자료만 제출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 이미 실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중단확인서” 및 “퇴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

1. 신청 주체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인정 범위

-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병일 경우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신청 방법

- 신청방법에 따라 대리인의 범위 일부 제한

신청구분	인터넷 신청	방문, 우편(등기), 팩스 신청
대리인의 범위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①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③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서식9)' 및 다음의 서류 추가제출

대리인	공통 제출서류	추가사항
①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은 생략가능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③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① 대리인의 증명을 위해 위임장에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직인 날인 ②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유선전화를 통해 위임 여부 추가 확인 가능

* 다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서식6)에서 의식불명이 확인되는 경우(직종코드 91번 확인) 위임장 제출 생략 가능

2. 신청방법

가. 신청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자체 명	관할 지사명	지사 소재지	FAX번호
경기도 용인시	용인서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보정동)	031-229-067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지사	전북 익산시 고봉로 285(영등동)	063-279-1744

나.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민원여기요/팩스발송·결과조회/모바일팩스 보내기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은 상병수당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절차 조회만 가능

다. 신청 기한

- 대기기간이 속하는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우편(등기) 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 예시) 퇴원일 5.1.의 경우 6.30.까지 지사 도착 서류에 한해 인정



Q & A

Q.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병수당 신청은 2023년 7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Q. 시범사업 기간(2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상병수당 신청이 어렵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기간('23.7.3.~'25.7월 예정)의 연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Q. 상병수당을 받고 있던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을 받는 중에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한 급여기간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일자 또는 우편 도착/방문일자 중 더 늦은 일자를 신청일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Q. 용인시에 있는 다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다른 지사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용인서부지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익산지역 대상자는 익산 지사만 해당)



〈(요약) 신청인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발급처	작성주체	제출방법	비고	
최초 신청	①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원용)	공단 홈페이지	-	본인, 가구원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대리신청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대법원	대법원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본인 기준 출력	
	③ 의무기록지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입원요약지 or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④ 근로중단확인서		공단 홈페이지	사업주	사업주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⑤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공단 홈페이지	본인	본인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신제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만 해당
	⑥ 매출증빙 자료	신용·체크카드 매출 전표	여성금융협회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방문, 우편(등기), 팩스	
		세금계산서	소득지급처				
	수당(급여) 지급 자료						

구분	구비서류	서식 배부처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거주 지역(또는 사업장) 체크 → 설문조사 작성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외 구비서류 이미지 파일 첨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 발송 ※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경우라도 그 외 구비서류 및 보완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팩스로 제출 가능 	

< 신청인 근로형태별 필수 제출서류 (최초신청) >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구분		공통 ㉠		근로형태별 ㉡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①-1.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법」 제3조 1항의 "근로자"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1-1】 상병수당신청서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구원용)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3】 근로중단 확인서 (사업장 근로자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 신청시 ① 가족신청서 -【서식4】 지급신청 위임장 -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② 사업장 신청서 -【서식9】 지급신청 위임장 (직인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계좌 입금 요청시 -【서식6】 상병수당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①-2. 사업주 「건강보험법」 제3조 1항의 "사용자"를 의미				
① 외의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자 중 노무제공자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일 경우 - 대상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① 외의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자 중 자영업자(임의가입)	②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일 경우 - 대상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③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일 경우 - 대상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①, ②외의 자영업자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일 경우 - 대상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식2】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 입원 초일 직전 3개월 동안의 매출내역 증빙자료 첨부 필요 (제2편 제3장, 4. 구비서류 참고) 			

5 상병수당 심사 관련 유의사항

1. 서류 보완 요청

- 필수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심사 중 정확한 판정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 가능

- 상병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SMS 또는 알림톡을 통해 보완요청자료의 내용, 자료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안내 예정

* 통상적으로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 지급되나, 자료 보완 요청 시 30일까지 추가 소요될 수 있음

2. 사업장 현장방문 등

-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4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신청서류 미비로 서류 보완 필요시 기간이 더 지연될 수 있음), 심사 완료 시 SMS, 알림톡 등으로 통보 예정

- 상병수당 대상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상병수당 신청기간(의료이용일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예정

- 공단의 심사 결과 수급일수가 조정된 경우 심사 결과 시에 함께 통보

6 급여 지급

1. 급여일수 산정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46,180원 (최저임금 60%)	X	급여지급일수
-----------------------------------	---	--------

- (급여지급일수)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료이용일수를 바탕으로 대기기간(3일) 및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 [①휴가기간 중 급여를 수령한 전체 기간] + [②지원자격 변동으로 인한 제외기간] - [①,② 중복기간]

** (유의사항) 대기기간 중에는 유급병가 사용하더라도 급여지급일수에 영향 없음

- 최대보장기간(1년 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 가능

* 1년 내 여러 번 상병수당을 신청하더라도 각각의 신청 건이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합산 급여일수가 최대보장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최대보장기간 기산일) 첫 심사결정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초일과 동일한 월·일부터 1년 (매 년 동일일자 적용)

2. 급여지급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다만, 서류 보완요청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경우 30일까지 추가 소요 가능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 원칙
 - 본인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족 또는 제3자 계좌 지급 가능 (다음 페이지 박스 참조)

- ①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보호자에게 지급가능
- ②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지급가능, 후순위 대상자가 수령하고자 할 경우 '상속대표합의동의서'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부양의무자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망이 확인되는 자료(사망진단서 등) ② [서식6]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수령인의 신분증 	지원불가

- ③ 신청인이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환자의 파산, 압류 등에 따른 지급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가족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식6]지급계좌 변경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③ 압류 파산 증빙서류 ④ 위임자의 신분증 ⑤ 대리인의 신분증 ⑥ 수령인의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급계좌변경신청서 ② 대리인 위임장 ③ 압류 파산 증빙서류 ④ 인우보증서(수령인에 대한) ⑤ 인우보증인* 신분증 사본 ⑥ 인우보증인 인감증명 ⑦ 위임자의 신분증 ⑧ 대리인의 신분증 ⑨ 수령인의 신분증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인우보증인: 수령인에 대하여 보증하는 자</p>

- ④ 신청인이 본인이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 내방시 가족지급 계좌변경 증빙서류〉

수령대상	가족	이해관계인(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식6]지급계좌 변경신청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수령인계좌사본 ⑤ 수령인의 신분증 	지원불가

7 연장신청

1. 연장신청의 요건

가. 대상자

-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며, 그와 동일한 상병으로 추가 의료이용이 발생한 자(추가로 입원이 발생했을 필요는 없음)
 -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 국적, 지원제외자 요건은 재충족 필요
(연령, 취업자 요건은 최초 신청 시에 자격 충족한 경우 그대로 인정)

나. 상병 요건

① 동일한 상병

- 최초에 신청한 건과 주상병이 동일한 상병이어야 함
 - 입원과 외래진료의 주상병코드가 다른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두 상병 간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

② 인정기간

- 최초에 신청한 건의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연장 신청 가능

② 주당 외래진료 횟수 제한

- 1주당 외래 진료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 증증질환 예외 지침은 연장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다. 신청

- (기한) 첫 상병수당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주체·방법, 구비서류) 최초 신청과 동일

라. 급여 지급

- 공단의 심사를 거쳐 급여지급일수 확정 및 지급 (대기기간 일수 미제외)

* 연장 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서류 보완 요청 시 추가 30일 소요

04

기타 안내사항



04. 기타 안내사항

1. 재심의 청구

가. 신청 대상

- 신청자가 자격심사·상병요건 심사 및 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공단의 환수고지(부당청구, 중복수급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 * 공단의 결정을 반론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나. 신청기간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란 상병수당 지급통보서, 심사 불승인 통보서, 지급중단통보서, 환수 결정 및 납부통보서 수령일을 의미함

다. 신청방법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등기), FAX 제출

라. 처리기간

- 재심의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재심의 청구서 접수일 : 방문일, 우편도착일, FAX 접수일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부당수급 등

가. 목적

-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수당을 수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급하게 하는 등의 부당수급이 발생한 경우, 행정착오·시차 등으로 인해 급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 환수, 급여중단, 급여 제한 등 조치

나. 환수

- (대상자) ① 허위증빙 제출 등 부당수급, ② 중복수급 제한 사회보장제도 이중수급, ③ 행정시차 등 수급자격 변동으로 수급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 정산이 필요한 자
- (환수금액) 환수일수 × 46,180원

다. 급여 중단 및 제한

- (급여 중단) 신청 및 지급 또는 지급 후 일련의 과정에서 수급자의 과실 없는 행정착오, 시차 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상실 된 경우 급여 중단
- (급여 제한) 신청 및 지급, 지급 후 일련의 과정에서 고의적인 부당수급이 확인 되었을 경우 급여제한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경기 용인서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58(보정동) 6,7,8층 상병수당운영팀 | 전화번호 031-329-4161

[전북 익산지사]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85(영등동) 상병수당운영팀 | 전화번호 063-840-862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